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93

발의연월일: 2025. 2. 24.

찬 성 자: 안상훈・박준태・서천호

서명옥 • 윤상현 • 인요한

김선교 · 최보윤 · 이달희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게"를 "자(제1항제5호의 자는 제외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
-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
	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4
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u>자에게</u> 능력 회복이나 근	<u>자(제1항제5호의 자는 제</u>
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	외한다)에게
런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	
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제1항제 5호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